



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CONSEILS  
EN PROPRIÉTÉ INTELLECTUELLE

INTERNATIONAL FEDERATION OF  
INTELLECTUAL PROPERTY ATTORNEYS

INTERNATIONALE FÖDERATION  
VON PATENTANWÄLTEN

## 2015. 4. 13. 및 18.자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이사회 결의 “단일특허에 대한 보충적 보호인증을 위한 입법의 긴급한 필요”

국제 변리사 연맹, **FICPI**는 전 세계 자유직업을 널리 대변하는 단체로서, 2015. 4. 13. 및 18.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세계 총회 및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결의를 통과시켰다:

통합특허법원 조약 (UPC 조약)은 유럽특허 (EP)와 유럽단일특허 (UP) 및 특허로 보호되는 제품에 부여되는 보충적 보호인증서 (SPC)에 적용됨을 **주목** (UPC 조약 제 3조 (a) 및 (b))

현재 UPC 조약의 보충적 보호인증서에 대한 정의는 EC 규칙 제 469/2009호 또는 EC 규칙 제 1610/96호에 따라 “유럽특허”가 부여된 보충적 보호인증서에 대한 언급만이 있을 뿐이고 (UPC 조약 제 2조 (h)), 이들 규칙은 단일특허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**추가 주목**

현재 단일특허에 대한 보충적 보호인증서의 부여 또는 효력을 규율하는 입법은 존재하지 않음을 **추가 주목**

“예상 회원국 간 단일한 효력”<sup>1</sup>을 갖는 단일특허에 대한 보충적 보호인증서를 위한 입법 수립이 필요하고, 특허권자들이 특허권 부여시점에 단일특허에 대한 보충적 보호인증서의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<sup>2</sup> 이러한 입법은 통합특허법원/단일특허 시스템이 발효되는 때에 존재해야만 함을 **관찰**

해당 당국은 예상 회원국 간 단일한 효력을 갖는 단일특허에 대한 보충적 보호인증서를 위한 적절한 입법을 도입하는 긴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**촉구**

<sup>1</sup> 단일특허를 정의하는 EU 규칙 (2012. 12. 17.자 제 1257/2012호) 참조

<sup>2</sup> 특허의 단일한 효력에 대한 요청은 특허권 부여 후 1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. (EU 규칙 제 1257/2012호 제 9조 (g))